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79호 2026. 1. 15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 「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6-132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15일

예 천 군



1. 규칙명 :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규칙안

2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장기 재직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경조사 휴가 확대(안 제21조제1항)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별표 1 적용

나. 장기 재직휴가 확대(안 제21조제11항)

- 2025 노사발전협의 결과 반영

다.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허용(안 제21조제14항)

-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 개정 적용

라.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(안 제21조제16항)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 적용

4. 개정규칙안

- 붙임과 같음

5. 의견제출

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thsqhfo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총무과

3) 팩스 : 054-650-630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(전화: 054-650-683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칙명 :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규칙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4항 단서의 후단 중 “사용”을 “모성보호시간 사용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⑪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별표 7의 운영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⑪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
별표 6,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.

[별표 6] <개정 2026.00.00.>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1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5
	자녀(결혼준비 포함)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 산	배우자	<u>20</u>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<u>25</u> 일)
입 양	본인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, 조부모·외증조부모, 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* 비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[별표 7] <신설 2026.00.00.>

장기재직휴가 운영 기준(제21조제11항 관련)

1. 재직기간 별 휴가부여 일수

재직기간	휴가일수
5년 이상 10년 미만	재직기간 중 5일
10년 이상 20년 미만	재직기간 중 10일
20년 이상	재직기간 중 20일
30년 이상	재직기간 중 30일

2. 재직기간의 산정방법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름

3. 1회의 장기재직휴가는 3일 이상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.

다만, 전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3일 미만의 잔여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5. 장기재직휴가 신청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복무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특별휴가) ① ~ ⑨ (생략)	제21조(특별휴가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
⑩ 삭 제	
⑪ <u>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재직기간 중의 휴가일수는 최장 30일(휴가일수는 5일 이상 10일 이내로 분할할 수 있으며,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다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른다.</u>	⑪ <u>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별표 7의 운영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u>
1. ~ 3. (생략)	1. ~ 3. (삭제)
⑫ (생략)	⑫ (현행과 같음)
⑬ 삭 제	
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(日)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또한,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	⑭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 --, -----

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
으며,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
할 수 없다.

⑮ (생 략)

<신 설>

--,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-----
-----.

⑮ (현행과 같음)

⑯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
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
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
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
【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】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7. 4. 25., 2021. 11. 30.>

③~⑦ (생략)

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,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4. 25., 2018. 12. 18., 2019. 12. 31., 2024. 7. 2.>

⑨~⑭ (생략)

⑮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 <신설 2025.7.22>